

-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1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1월 21일

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진흥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주차장법 및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조례 중 일부를 적법성과 현실성 있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노외주차장 표지 설치에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(안 제6조)
-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【별표1】 제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 기준을 적용토록 함(안 제18조)
-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삭제함(안 제20조)

- 조례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신설함(제 21조)
-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감 또는 감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【별표3】을 개정

라. 참고사항

-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이 개정 조례안은 '99. 2. 8 개정된 주차장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 -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민영 노외 주차장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자율화되었고 주차장의 표지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한하도록 규제완화 되었으며
 -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을 시행규칙 제2조에, 과태료 처분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토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, 조례로서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 및 삭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현행조례 제19조(과징금의 처분) 제1항 중 “과징금가감기준【별표3】과 같다”는 주차장법 시행령17조2항이 “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”로 개정됨으로서, 조례로 규정함은 부적절하므로
 - 조례 제19조1항 중 「과징금가감기준」을 「과징금부과기준」으로 수정하고 「과징금가감기준」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위안 가결